

# 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09
----------	-----

2023. 11. 1.(수)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나. 발의일자 : 2023년 10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11월 1일

-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나. 기관별 출연개요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계			8,265,308	
1	충북연구원	-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된 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4,690,00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 행정·재정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250,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제3항
3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기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0,00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4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 필요	195,188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5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지역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관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 필요	3,070,120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 다. 주요내용

### ①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 4,69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5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 60백만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④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 195백만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사업

**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지원 : 3,070백만원**

-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진흥 등 충청북도의 교육정책과 통합 교육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진흥원의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3. 검토의견

#### ① 충북연구원

##### 가. 충북연구원 현황

- 충북연구원은 지역 현안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5월 설립되었음.
- 현재 충북연구원장 1명, 연구직 27명, 일반직 12명으로 총 40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음(2023년 9월말 기준).

#### 〈충북연구원 인력 현황〉

(단위 : 명)

년도 \ 구분	구분	정원	현원	비고
2020년	원장	1	1	43/42
	연구직	30	30	
	일반직	12	11	
2021년	원장	1	1	43/43
	연구직	30	30	
	일반직	12	12	
2022년	원장	1	1	46/43
	연구직	33	30	
	일반직	12	12	
2023년 9월말	원장	1	1	46/40
	연구직	33	27	
	일반직	12	12	

- 2023년 9월말 기준, 148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원 1명당 평균 5.48건의 연구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상임연구원의 연구실적은 총 562건임.

## 〈충북연구원 연구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년도	계	1인평균 수행건수	기본과제	창의·기획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2020년	132	4.4	24	25	53	30
2021년	147	4.9	25	18	55	49
2022년	135	5.13	25	19	50	41
2023년 9월말	148(87)	5.48	27(25)	21(21)	44(15)	56(26)
합 계	562(87)	4.97	101(25)	83(21)	202(15)	176(26)

※ ( )는 진행 중인 과제 건수

### 나. 주요내용 검토

-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1)과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2)에 근거를 두고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충북연구원은 충북 지역의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해 왔음.
- 충북연구원 대상 출연금 규모는 총 46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43억7천만원 대비 6.8%인 3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출연금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1)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총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2) 제6조(운영경비)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북연구원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안)	증감
충북연구원 운영	4,040,000	4,340,000	300,000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	330,000	350,000	20,000
출연금 계	4,370,000	4,690,000	320,000

<충북연구원 202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1) 세입 개요 (자체수입 + 출연금)

(단위 : 천원)

과목	2024년	2023년	증감
합 계	6,014,421	5,843,736	170,685
소 계	1,674,421	1,803,736	-129,315
예금이자수익	20,000	9,000	11,000
수탁과제전입금	833,700	741,468	92,232
보조사업전입금	64,869	42,269	22,600
자체수입			
공투센터전입금수익	62,000	32,829	29,171
기금이자전입금수익	70,852	93,801	-22,949
기타영업외수익	3,000	2,511	489
보증금회수수입	0	190,000	-190,000
순세계잉여금	620,000	691,858	-71,858
의존수입			
출연금	4,340,000	4,040,000	300,000

## 2) 세출 개요 (필요경비)

(단위 : 천원)

과 목			2024년	2023년	증감
합 계			6,014,421	5,843,736	170,685
사 업 비 용	목적사업비	소 계	891,248	774,203	117,045
		자 체 사 업	349,800	352,100	-2,300
		기 획 사 업	541,448	422,103	119,345
	일반관리비	소 계	5,042,642	4,931,895	110,747
		인 건 비	3,507,142	3,436,369	70,773
		물 건 비	1,178,015	1,148,261	29,754
		경 상 이 전	357,485	347,265	10,220
	예 비 비	예 비 비	47,001	120,558	-73,557
자 본 적 출 지	공기구비품	자 산 취 득 비	33,530	17,080	16,450

### 다. 종합 검토의견

- 충북연구원은 충북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 과제의 개발을 비롯한 각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북연구원은 세입에 있어서 출연금 및 수탁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황

-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1984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재)지방행정연구소가 설립됨.
-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변경되고(1986.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1986.5)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의무가 법정화됨.
- 연구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평가 및 연구,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2024년 충청북도의 출연 요청액은 전년도와 같은 250백만원이며, 출연금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 〈출연금 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합 계	250,000		
소 계(75.6%)	189,000		
인 건 비	189,000	•연구원 총액인건비(71억원) 2.7%	
소 계(16.0%)	40,000		
연 구 사 업 비	정책연구과제	10,000	•정책연구 개발사업 등
	시도현안과제	8,000	•현안과제 개발사업 등
	학술행사 등	12,000	•국내·외 세미나, 지방의정아카데미, 유관기관 및 시도연구원 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 등
	발간사업 등	10,000	•지방행정연구, 지방자치이슈와포럼, 지방자치정책브리프, 지방의정브리프 등
소 계(8.4%)	21,000		
일 반 운 영 비	21,00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전산운영, 교육훈련, 시설비 및 청사관리비 등	

## 나. 검토의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sup>3)</sup>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충청북도가 요청하는 분야의 협력연구를 매년 수행하고 있음.
- ※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책과제연구와 정책이슈리포트를 지원하고 있음.

### <정책과제연구 및 정책이슈리포트 수행 현황>

구분	연도	연구명
정책연구 과제 (시도별1건)		◆ 광역 시·도에 국한된 지역정책 중심의 연구에 더해 자치단체 간 상생적인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지역의 공통 현안을 연구
	2019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구축 방안 연구(회계과)
	2020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농업정책과)
	2021	정부 추가 특례 시군구 선정기준 관련 대응 방안 연구(자치행정과)
	2022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정책기획관)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정책기획관)
	2023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인구청년정책담당관)
정책이슈 리포트 (시도별1건)		◆ 자치단체별 현안이슈 대응을 위해 자치단체의 환경을 고려한 컨설팅
	2019	생활SOC 정책의 긍정적 효과(사례) 및 효율적 운영방안(정책기획관)
	2020	청년수당 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실질적·효율적 지원 방안(청년정책담당관)
	2021	충북형 보통교부세 산정수요 발굴 및 교부세 확충 방안(예산담당관)
	2022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소방본부 대응총괄과)
	2023	충북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소방력 운영 효율화 방안(소방본부 소방행정과)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균등분담금을 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미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시·도별 재정력, 인구수, 시·군수 등이 상이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 가. 지방공기업평가원 현황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경영지도·자문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sup>4)</sup>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임.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sup>5)</sup>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음.

4)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2~3항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 하여야 한다.

(5~8항 생략)

○ 2024년 출연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6천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시·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3	2024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8	1,002	△6	10.1570	-	498	376	-	504
서울특별시	78	78	-	1.4075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382	3	36	10	1	24
대구광역시	60	54	△6	0.6825	2	30	6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43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914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6126	2	30	6	1	24
울산광역시	54	54	-	0.5723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2363	4	42	97	4	42
강원특별자치도	60	60	-	0.4585	1	24	29	3	36
충청북도	60	60	-	0.5258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5988	2	30	33	3	36
전라북도	54	54	-	0.4445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4229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	0.4000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6614	2	30	36	4	42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나.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와 임직원에게 대한 전문교육 등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출연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세부내역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4 한국지방세연구원

###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sup>6)</sup>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sup>7)</sup>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sup>8)</sup>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음.

### 나.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출 대상인 보통세 세입의 증가에 따라, 출연금 산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의 법적 근거 및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6)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7)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8)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충청북도 출연금 배분 내역>**

(단위: 천원)

자치단체명	① '22년 결산 지방세	② '22년 결산 보통세	'24년 출연금 (②*1.2/10000)
충북도 소계	3,495,831,685	3,250,383,776	390,046
<b>충북도 본청</b>	1,871,991,265	1,626,565,832	195,188
청주시	865,216,859	865,197,051	103,824
충주시	178,691,431	178,691,431	21,443
제천시	100,878,204	100,877,929	12,105
보은군	30,047,378	30,047,378	3,606
옥천군	40,423,198	40,423,041	4,851
영동군	34,533,801	34,533,801	4,144
증평군	41,468,098	41,468,065	4,976
진천군	126,324,874	126,324,027	15,159
괴산군	31,991,710	31,991,710	3,839
음성군	145,307,941	145,306,585	17,437
단양군	28,956,926	28,956,926	3,474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충청북도로부터 의뢰받은 지방세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 1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현황

□ 연구과제 수행 : 총 1,132건 (2011년~2023년)

-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 관련 법제, 지방세 과세표준제도, 세외수입 제도 관련 기초이론 등 연구
- 정기 수요조사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실현 관심도가 높은 수시 요구사항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연구 수행

### <연도별 과제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2011~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총계	1,132	360	100	113	97	117	133	103	109
기본	106	51	10	6	9	4	4	5	17
정책·수시	656	165	47	71	57	88	73	67	88
기타	370	144	43	36	31	25	56	31	4

□ 최근 5개년 시도별 연구과제 과제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행중)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의뢰	채택
계	96	45	120	65	75	55	124	59	140	81
서울	17	9	16	9	9	6	18	13	41	14
부산	17	3	9	6	8	6	3	2	11	5
대구	3	3	2	2	2	2	5	1	5	3
인천	7	1	8	6	8	6	10	4	12	9
광주	2	1	8	0	7	4	9	2	12	6
대전	2	1	6	1	5	5	7	3	4	3
울산	2	2	1	1	1	0	1	0	1	1
세종	3	1	2	1	3	1	5	1	4	2
경기	19	8	32	18	9	6	25	10	11	11
강원	1	0	4	1	4	3	8	5	13	9
<b>충북</b>	<b>5</b>	<b>2</b>	<b>7</b>	<b>3</b>	<b>7</b>	<b>5</b>	<b>12</b>	<b>3</b>	<b>4</b>	<b>3</b>
충남	2	1	5	3	2	2	5	4	7	2
전북	2	4	4	2	3	2	4	1	2	2
전남	3	1	2	2	0	0	4	2	5	4
경북	6	4	7	4	2	2	4	4	4	3
경남	2	1	6	5	2	2	2	2	3	3
제주	3	3	1	1	3	3	2	2	2	2

**참고 2**

**시·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 (A+B)	광역단체 (A)	기초단체			
			소계 (B)	시	군	구
합 계	13,078,569	8,570,298	4,508,271	2,957,527	388,634	1,144,109
서울	3,199,717	2,653,969	545,748	-	-	545,748
부산	746,014	583,445	162,569	-	-	162,569
대구	481,875	371,627	110,248	-	-	110,248
인천	669,357	529,453	139,904	-	-	139,904
광주	291,885	242,827	49,058	-	-	49,058
대전	292,306	236,941	55,365	-	-	55,365
울산	269,918	188,702	81,217	-	-	81,217
세종	95,188	95,188	-	-	-	-
경기	3,335,795	1,562,060	1,773,735	1,744,765	28,970	-
강원	356,606	213,999	142,606	101,444	41,162	-
<b>충북</b>	390,046	<b>195,188</b>	194,858	137,372	57,486	-
충남	566,554	294,925	271,629	227,062	44,567	-
전북	369,745	210,447	159,298	123,719	35,579	-
전남	474,022	265,339	208,683	132,778	75,905	-
경북	594,882	304,644	290,238	234,775	55,462	-
경남	727,863	404,748	323,115	273,612	49,503	-
제주	216,796	216,796	-	-	-	-

## 5]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 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현황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2023년 1월 출범한 재단법인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sup>9)</sup>에 근거하여 충청북도가 출연하고 있음.
- 현재 원장 1명, 사무처장 1명, 직원 18명, 기간제 1명으로 총 21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음(2023년 9월말 기준).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직 급	정 원	비고
계	-	20	
원 장	-	1	
사무처장	-	1	
직 원	1 급	1	
	2급	4	
	3급	5	
	4급	4	
	5급	4	

9) 제8조(출연) 도지사·시장·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나. 주요내용 검토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규모는 총 30억7천1십2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27억9천8백3십1만8천원 대비 8.8%인 2억7천1백8십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세부 출연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4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담당	사업명	출연금액			비고
			2023년도	2024년도	증감액	
계			2,798,318	3,070,120	271,802	
1	경영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	1,661,318	1,870,120	208,802	계속
2	경영	충북인재평생교육 홍보 및 운영	15,000	50,000	35,000	계속
3	인재	글로벌 해외연수	180,000	-	△180,000	기금
4	인재	수도권 장학금 지원	180,000	-	△180,000	기금
5	인재	도내대학 장학금 지원	44,000	-	△44,000	기금
6	정책	충북 시민대학(1년차)	40,000	150,000	110,000	계속
7	정책	충북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7,000	10,000	3,000	계속
8	정책	평생교육 및 창의인재 정책연구	20,000	100,000	80,000	계속
9	정책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센터 운영	60,000	100,000	40,000	계속
10	정책	충북 미래인재교육포럼	20,000	20,000	-	계속
11	정책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10,000	20,000	10,000	계속
12	정책	디지털 영상자서전(도민 디지털 역량강화)	190,000	-	△190,000	폐지
13	정책	충북 교육통계 조사 분석	20,000	-	△20,000	폐지
14	정책	충북평생교육 및 미래인재 중장기 발전계획	20,000	-	△20,000	폐지
15	평생	충북문해교육센터 운영	50,000	100,000	50,000	계속
16	평생	제3회 충청북도평생학습박람회	-	50,000	50,000	신규
17	평생	충북 농업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	50,000	50,000	신규
18	평생	지산·학 연계 평생학습지원 강화	20,000	40,000	20,000	계속
19	평생	충청북도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	20,000	20,000	신규
20	평생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예비사업	-	20,000	20,000	신규
21	평생	환경·생태 평생교육 강화	30,000	40,000	10,000	계속
22	평생	고등평생직업교육 운영	40,000	50,000	10,000	계속

23	평생	평생학습형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공모사업	40,000	80,000	40,000	계속
24	평생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30,000	60,000	60,000	계속
25	평생	충북평생학습 및 교육문화 촉진	46,000	40,000	△6,000	축소
26	평생	충북시민아카데미 운영	20,000	40,000	20,000	계속
27	평생	충북형 디지털 마을 생활연구소 프로젝트	20,000	40,000	20,000	계속
28	평생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15,000	20,000	5,000	계속
29	평생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	50,000	50,000	신규
30	평생	도민 온라인 교육콘텐츠 구입	-	50,000	50,000	신규
31	평생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20,000	-	△20,000	폐지

## 나. 종합 검토의견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지역의 우수 인재 발굴·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세부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글로벌 해외연수, 디지털 영상자서전 등 사업의 폐지, 이관되었음에도 기존 사업 규모가 대폭 증액 또는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등 전년대비 8.8%(2억7천1백8십만2천원)의 출연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바, 인력 현황, 사업별 사업계획 및 실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추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409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 기관별 출연 개요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1	충북 연구원	-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된 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4,690,00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2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 지방 행정·재정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국·지자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250,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제3항
3	지방 공기업 평가원	-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기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0,00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4	한국 지방세 연구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지원 필요	195,188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5	충북인재 평생교육 진흥원	- 지역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관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 필요	3,070,120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 3. 주요내용

#### ①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 4,69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5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 60백만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

#### ④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 195백만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 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지원 : 3,070백만원

-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진흥 등 충청북도의 교육정책과 통합교육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진흥원의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4. 관계법령 발췌 등 : 붙임

**붙임 1**

**1] 충북연구원**

**< 출연 계획 >**

<b>사 업 명</b>	<b>충북연구원 운영</b>	<b>출자·출연금</b>	4,690,000천원		
<b>출자·출연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재)충북연구원</li> <li>○ 대표 : 황인성</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li> <li>- 인 력 : 정원 46명(현원 41명)</li> <li>- 주요사업 : 도정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li> </ul> </li> </ul>				
<b>사 업 내 용</b>					
<b>사업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24. 1. ~ 12.</li> <li>○ 사업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li> <li>○ 출연금액 : 4,69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 운영 : 4,340백만원</li> <li>- 특별연구조직(공공투자분석센터) : 350백만원</li> </ul> </li> </ul>				
<b>출자·출연필요성</b>	○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구체적인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충북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충북연구원 출연 필요				
<b>근거법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li> <li>○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li> </ul>				
<b>검토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북연구원은 충북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li> <li>○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및 보증금회수수입 등 자체세입 감소와 인건비(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기획사업(분원 운영 및 경력인사 활용) 등 목적사업비의 인상 등 세출 증가로 '23년 대비 3억원 증액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li> </ul>				
<b>주관부서</b>	정책기획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맹은영	김민정	신혜정	220-2136

##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043-220-1147 홈페이지: www.cri.re.kr			
주요연혁	- 1990.05.15. 충북경제연구소 개소 - 1994.12.27. 충북개발연구원 명칭변경 - 2011.03.24. 충북발전연구원 명칭변경 - 2016.04.20. 충북연구원 명칭변경			기관형태 (출자,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3.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93		41		52			
임원 ('23.9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직위)		임기			
	이사장	김00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이사(당연직)	정00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재임기간			
	"	조00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재임기간			
	"	김00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재임기간			
	"	강00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재임기간			
	"	권00	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장		재임기간			
	"	황00	충북연구원장		재임기간			
	이사(선임직)	한00	충북지역개발회 회장		20.10.19 ~ 23.10.18			
	"	주00	청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10.19 ~ 23.10.18			
	"	유00	미래농어촌개발연구원 대표		20.10.19 ~ 23.10.18			
	"	백00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10.19 ~ 23.10.18			
	"	고00	대원대학교 총장		20.10.19 ~ 23.10.18			
	"	안00	청풍로펌 변호사		20.10.19 ~ 23.10.18			
	"	김00	전)충북대학교 총장		20.10.19 ~ 23.10.18			
	"	차00	청주대학교 총장		20.10.19 ~ 23.10.18			
	"	차00	충북경제포럼 회장		20.10.19 ~ 23.10.18			
	"	고00	한국생산성본부 부회장		20.10.19 ~ 23.10.18			
	감사(당연직)	맹00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재임기간			
	감사(선임직)	김00	공인회계사		20.10.19 ~ 23.10.18			
주요기능	-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자본금(기금) (단위:백만원)		2,171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12,587
	일반 회계	예산액	5,645	6,107	5,843		부채	1,415
		지자체 지원액	4,450	4,729	4,390		자본	11,172
2022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229			12,476		-1,247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3조(운영재원)

-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운영경비)

-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출판물 판매 대금
  4. 그 밖의 수입
-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출연 계획 >

<b>사업명</b>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	<b>출자·출연금액</b>	250,000천원
<b>출자·출연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li> <li>○ 대표 : 김일재</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li> <li>- 인력 : 정원 104명(현원 94명)</li> <li>- 주요사업 : 지방 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 조사·연구 등</li> </ul> </li> </ul>		
<b>사업내용</b>			
<b>사업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24. 1. ~ 12.</li> <li>○ 사업내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지원</li> <li>○ 출연금액 : 2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7개 시·도 공동 출연 : 각 250백만원(세종시 150백만원)</li> </ul> </li> </ul>		
<b>출자·출연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방분권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활동 수행</li> </ul>		
<b>근거법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3항</li> </ul>		
<b>검토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각 시도는 연구원 운영비, 인건비, 기금에 총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17개 시·도 공동 출연</li> <li>○ 자치분권 확대 정책개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협력 방안 마련 등의 역할 수행을 고려할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함</li> <li>○ 광역 시·도 지방분권 정책지원 등 미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전국 시도의 공동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li> </ul>		

<b>주관부서</b>	정책기획관	소속부서장	팀장	담당주무관	전화
		맹은영	김민정	장수량	220-2135

##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전화번호: 033-769-9916			
					홈페이지: www.krila.re.kr			
주요연혁	- 1984. 9 지방행정연구소 개소 - 1986.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칭			기관형태 (출자,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3.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05		94		11			
임원 (’23.9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직위)		임기			
	이사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20. 12. 17. ~ 23. 12. 16.			
	이사(당연직)	21명	행안부(4)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자치분권국장, 지방재정국장, 지역발전지원국장 광역 사도(17) : 기획관리(조정)실장		재임기간			
	이사(임의직)	김OO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2. 3. 4. ~ ’24. 3. 3.			
	〃	김OO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2. 3. 4. ~ ’24. 3. 3.			
	〃	손OO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2. 3. 4. ~ ’24. 3. 3.			
	〃	이OO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2. 3. 4. ~ ’24. 3. 3.			
	주요기능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평가 및 연구 -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57,229 (직전연도말 기준)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65,443
	일반 회계	예산액	11,243	13,631	13,352		부채	8,218
		지자체 지원액	4,100	4,100	4,150		자본	57,225
2022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8,986			19,100		-114	

## 관계법령 발취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제3조(출연금)

-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 < 출연 계획 >

<b>사 업 명</b>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b>출자·출연금 비율</b>	60,000천원	
<b>출자·출연 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관 명 : 지방공기업평가원</li> <li>○ 대 표 : 목영만</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서초동)</li> <li>- 인 력 : 75명(이사장, 상임이사, 연구직 34, 일반직 22, 무기계약 6, 파견공무원 5, 비정규직 6)</li> <li>-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경영지도, 자문, 사업타당성, 정책연구·교육 등</li> </ul> </li> </ul>				
<b>사 업 내 용</b>					
<b>사업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24. 1. ~ 12.</li> <li>○ 사업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정책연구과제 수행 등</li> <li>○ 출연금액 : 6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재정력지수(50%) 및 평가대상 공기업수(50%) 고려 전국 시도별 배분</li> <li>* 17개 시도 출연금액 : 1,002백만원</li> </ul> </li> </ul>				
<b>출자·출연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기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li> </ul>				
<b>근거·법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li> </ul> </li> </ul>				
<b>검토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적 연구기관으로서, 각 시도는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li> <li>○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정책연구·컨설팅·사업타당성 검토 등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구수행을 강화하고 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li> <li>○ 특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계획·예산·결산 등은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이사 5명(시도별 순번제 위촉)이 포함된 이사회(11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함</li> </ul>				
<b>주관부서</b>	예산담당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승열	이종민	김송은	220-2242

## < 출연기관 현황 >

설립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전화번호: 02-3489-2700			
					홈페이지:www.erc.re.kr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2. 3.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li> <li>- 1994.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li> <li>- 2000. 1. 재)한국자치경영협회로 명칭 변경</li> <li>- 2002. 9.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명칭 변경</li> <li>- 2011. 4.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 변경</li> <li>- 2016. 6.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변경 및 법정기관화</li> </ul>			기관형태 (출자,출연)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			
인원현황 (23.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75명		69명 (무기계약 6명 / 파견공무원 5명)		6명			
임원 (23.9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목OO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23. 5.30. ~ '26. 5.29.			
	상임이사	김OO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23. 6. 5. ~ '26. 6. 4.			
	당연직이사 (비상임)	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1) : 지역경제지원관</li> <li>- 광역시·도(4) : 기획관리(조정)실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직위 재임기간</li> <li>- 광역시도 윤번제 (2년임기)</li> </ul> ('23. 1. 1. ~ '24. 12.31.)			
	위촉직이사 (비상임)	허OO	인천연구원 부원장		'20. 6.12. ~ '23. 6.11.			
		여OO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		'20. 6.12. ~ '23. 6.11.			
		임OO	한길회계법인 부대표		'22.11.24 ~ '25.11.23.			
감사(비상임)	박OO	성도이현회계법인 대표이사		'20. 6.12. ~ '23. 6.11.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 공기업의 설립 및 투자타당성 검토</li> <li>-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li> <li>-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훈련 등</li> </ul>							
자본금 (단위:백만원)		300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11,927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20,312
	일반 회계	예산액	17,937	18,074	18,094		부채	1,101
		지자체 지원액	1,014	1,008	1,008		자본	19,211
2022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4,756				14,475		281	

## 참 고

# 2024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시도 출연금 배분기준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모 : 1,002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76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고려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b>2</b>	<b>0.5~0.7이하</b>	<b>30</b>
3	0.7~0.9이하	36
4	0.9초과 ~	42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1	1~15	24
<b>2</b>	<b>16~25</b>	<b>30</b>
3	26~35	36
4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97, 공기업 수 평균 : 25.1(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3	2024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b>합 계</b>	1,008	<b>1,002</b>	△6	<b>10.1570</b>	-	<b>498</b>	<b>376</b>	-	<b>504</b>
서울특별시	78	78	-	1.4075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382	3	36	10	1	24
대구광역시	60	54	△6	0.6825	2	30	6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43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914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6126	2	30	6	1	24
울산광역시	54	54	-	0.5723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2363	4	42	97	4	42
강원특별자치도	60	60	-	0.4585	1	24	29	3	36
충청북도	60	60	-	0.5258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5988	2	30	33	3	36
전라북도	54	54	-	0.4445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4229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	0.4000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6614	2	30	36	4	42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공기업법」

####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⑥ 이사장은 이사회가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 한국지방세연구원

### < 출연 계획 >

<b>사업명</b>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	<b>출자·출연금</b>	195,188천원
<b>출자·출연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한국지방세연구원</li> <li>○ 대표 : 강성조</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li> <li>- 인력 : 85명(현원 71, 파견공무원 등 14)</li> <li>- 주요사업 :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li> </ul> </li> </ul>		
<b>사업내용</b>			
<b>사업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24. 1. ~ 12. ※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동사업</li> <li>○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li> <li>○ 출연금액 : 195,188천원('23년대비 13,611천원 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출기초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626,565,832천원)의 1만분의 1.2</li> </ul> </li> </ul>		
<b>출자·출연필요성</b>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b>근거법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li> <li>○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li> <li>○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li> </ul>		
<b>검토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li> <li>○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li> <li>○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li> </ul>		

<b>주관부서</b>	세정담당관	소속부서장	팀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정노	김윤미	윤유진	220-2755

##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02-2071-2789			
				홈페이지: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023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정규직 71명 (정규직 정원 88명)		71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직44, 관리직2, 전문직3, 사무직등20)	14명 (파견 공무원12, 청사관리원2)			
임원 (2023년 8월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백OO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2023.12.21.		
	부이사장	박OO	전라남도 신안군수		2023.2.28.~2024.2.27.		
	원장	강OO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연직		
	이사	진OO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연직		
	이사	박OO	경상남도 밀양시장		2023.2.28.~2024.2.27.		
	이사	류OO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23.2.28.~2024.2.27.		
	이사	이OO	경상북도 고령군수		2023.2.28.~2024.2.27.		
	이사(선임예정)	한OO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이OO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황OO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허OO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023.8.30.~2024.8.29.(예정)		
	이사(선임예정)	박OO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023.8.30.~2025.8.29.(예정)		
	감사	이OO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강OO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		2022.2.28.~2024.2.27.		
	주요기능	-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383 (2023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23,557 (자산 총액)
	예산액	12,805	18,069	17,689		부채	1,40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2,155 (자본금 총액)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세기본법」

####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5)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 < 출연 계획 >

<b>사 업 명</b>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b>출자·출연금</b>	3,070,120천원
<b>출자·출연 기 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관 명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li> <li>○ 이 사 장 : 김 영 환</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5</li> <li>- 인 력 : 정원 20명(현원 21명)</li> <li>- 주요사업 : 장학사업, 인재양성사업, 평생교육사업</li> </ul> </li> </ul>		
<b>사 업 내 용</b>			
<b>사업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li> <li>○ 사업내용 :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li> <li>○ 출연금액 : 3,070,12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비 : 1,870,120천원(인건비 1,189,496천원, 경상비 680,624천원)</li> <li>- 사업비 : 1,200,000천원</li> </ul> </li> </ul>		
<b>출자·출연 필 요 성</b>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수행과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교부가 필요		
<b>근거·법령</b>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b>검토인견</b>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미래인재육성부터 평생학습까지 초 생애 모든 도민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지원체계 일원화 및 연계 발전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면서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		

<b>주관부서</b>	RISE추진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송병무	이철순	나유정	220-2873

##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화번호: 043-224-0221 홈페이지: www.chrdf.or.kr		
주요연혁	- '08. 2월 설립등기 - '17. 8월 국민교육발전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 '22. 7월 제5대 김영환 이사장 취임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3.10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1명		20명			1명		
임원 (23. 9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직위)			임기		
	이사장	김○○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이사	윤○○	충청북도교육감			"		
	"	이○○	청주시장			"		
	"	조○○	충주시장			"		
	"	김○○	제천시장			"		
	"	최○○	보은군수			"		
	"	황○○	옥천군수			"		
	"	정○○	영동군수			"		
	"	이○○	증평군수			"		
	"	송○○	진천군수			"		
	"	송○○	괴산군수			"		
	"	조○○	음성군수			"		
	"	김○○	단양군수			"		
	"	김○○	충청북도 과학인재국장			"		
	"	신○○	충청북도 행정국장			"		
	"	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		
	"	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		
	"	이○○	충북대학교 교수			22.04.03. ~ 24.04.02.		
	"	오○○	대신정기화물 회장			22.04.19. ~ 24.04.18.		
	"	이○○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22.04.19. ~ 24.04.18.		
	"	임○○	前 충북여약사회 회장			22.05.14. ~ 24.05.13.		
	"	권○○	신한은행 충북본부장			22.06.22. ~ 24.06.21.		
	"	김○○	한국교원대 교수			23.06.29. ~ 25.06.28.		
	"	이○○	前 대성중학교 교장			23.06.29. ~ 25.06.28.		
	"	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3.06.29. ~ 25.06.28.		
"	이○○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22.06.22. ~ 24.06.21.			
"	정○○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원장			22.06.22. ~ 24.06.21.			
감사	송○○	충청북도 RISE추진과장			재임기간			
"	임○○	한빛회계법인사무소 공인회계사			23.06.29. ~ 25.06.28.			
주요기능	- 우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자본금 (단위:백만원)		80,000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	
최근3년 간 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78,641	
	일반 회계	예산액	6,461	6,308		9,255	부채	142
		지자체 지원액	686	710		2,798	자본	78,499
2022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288			2,178		1,110	

## 관계법령 발취

### □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 제8조(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등)

-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20조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제8조(출연)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